

# 교육비용 환불규정

구분		환불사유 발생일	환불금액
제18조 제2항 제1호,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	교육을 할 수 없거나 교육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납부 교육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총 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(정규교육과정)	교육 시작 1주 전 ~ 교육 시작 1일 전 (위약금 10%)	이미 납부한 교육비의 9/10 해당액
		기수 이동 후 교육 전	이미 납부한 교육비의 9/10 해당액
		교육기간의 1/3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육비의 2/3 해당액
	총 교육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(기수 외 교육과정)	교육기간의 1/2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육비의 1/2 해당액
		교육기간의 1/2 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
		교육기간의 1/2 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
비고	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기상상황 및 교육원 일정에 따라 변동된 교육일정은 교육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		
학칙에 의한 환불 불가사항	<p>이 안은 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’ 제18조 제 3항을 준용하여 작성함.</p> <p>교육원징계 및 기타 환불 불가사항 항목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1) 풍기문란 (성추행, 신체노출, 성행위, 유사성행위)</li> <li>(2) 강도, 강간, 도난</li> <li>(3) 폭행 (교육원 내 폭력, 폭언, 폭행 불허)</li> <li>(4) 교육원 시설물 및 기체 등 의도적인 파손</li> <li>(5) 교관 지시불이행 5회 이상자</li> <li>(6) 장기결석, 무단결석 3회 이상자</li> <li>(7) 교육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교육원 담당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이전 일자에 대해 환불요구일 인정 불가.</li> <li>(8) 그 외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</li> </ol> <p>개인사정으로 기수 이동은 1회 적용한다. 교육원 사정으로 기수 이동 후 환불 시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.</p>		